

[서식 예] 답변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무능력자 취소항변)

답 변 서

사 건 2000가소0000 물품대금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워인에 대한 답변

- 1. 피고는 20○○. ○. ○. 원고로부터 500,000원에 게임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계약당일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가 위 게임기를 구매할 당시 피고는 미성년자(만 15세)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300,000원은 피고가 피고의 부모의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의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것도아니고, 피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피고의 부모는 현재도피고에게 위 게임기 구매계약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2. 그러므로 위 계약은 미성년자인 피고가 법정대리인인 피고의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으로서 민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1. 을 제2호증

1. 을 제3호증

1. 을 제4호증

1. 을 제5호증

피고 부모의 진술서

피고 가족관계증명서

피고 기본증명서

거래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용이막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